

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「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」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2. 7. 29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



1. 건명: 수급자격(취업지원서비스/구직촉진수당) 인정 철회
2. 근거: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공시송달 내용
박O희	97. 11. 17.	삼척시 원당로2길20	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	「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 요청	1)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('22. 6. 23.) 2)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('22. 7. 12.) 3)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에 따른 <u>의견제출</u> 할 것 4)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아니 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전 통지 내용대로 처리함

4. 공고기간: 2022. 7. 29. ~ 2022. 8. 11.(14일간)
5. 기타 사항은 삼척고용복지+센터 장윤영주무관(☎ 033-570-190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